

최근 법정계량단위 정착 사례

1. 언론

관련 방송·기사에서 m(제곱미터)와 평을 병기하고 있으며, m(제곱미터)만을 사용하는 언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평당 단가"와 같은 개념의 "3.3m 당 단가" 사용은 m(제곱미터) 사용 정착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1m당 단가" 표시 정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례)

신문의 주간부동산 시세, 방송·신문기사에서 3.3m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 1m당 시세 표시로 전환 유도

2. 공공기관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는 이미 m(제곱미터)와 g(그램) 사용이 정착되었습니다.

(사례)

건설교통부 실거래가, 한국감정원 아파트 시세 및 m당 단가, 토지공사 토지분양계획, 주택공사 분양정보 등

3. 건설업계

대형 건설업계를 위주로 신규 분양에서 m(제곱미터) 사용이 정착 추세입니다.

또한, 아파트의 분양 광고시 자율적인 정수 면

적단위 표기를 통해 소비자들이 새로운 단위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례)

아파트의 분양 광고시 m(제곱미터) 표기, 주택공사의 정수 면적단위 아파트 분양



유경희
계량 측정제도과
공인연구관
02-609-7231

4. 부동산정보업체

인터넷 부동산 정보업체의 경우, 2007년 8월부터 면적단위를 모두 m(제곱미터)로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평당 분양가'라는 용어 대신, '3.3m(제곱미터)당 분양가'를 사용하는 업체가 늘고 있으며 향후 가격비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1m(제곱미터)당 분양가'를 사용하기 위한 수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

한국부동산정보협회, 부동산 114, 부동산뱅크, 국민은행, 부동산 서브 등 정보업체의 시세표기시 m(제곱미터) 사용

5. 귀금속 업계

귀금속 업계에서는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등 관련단체를 통해 g단위 사용의 정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신중한 g단위로의 전환을 위해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를 통해 정수 단위(2g, 3g, 4g)의 금형 제작·유통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례)

3.75g당 가격 표시를 1g당 가격표시, 백화점 마트 등에서 g 표시



법정계량단위, 이렇게 쓰시다

단위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합시다

구분	법정계량단위	비 법정계량단위	비 고 (법정단위)
길이	·미터 단위 (cm, m, km)	·자(尺), 마(里)(里)	1 자 = 30.303 cm
		·피트, 인치	1 피트 = 30.48 cm
		·마일, 마드	1 인치 = 25.4 mm
			1 마일 = 1,609.34 km 1 마드 = 0.914 4 m
넓이	·제곱미터 단위 (㎡, km², ha)	·평(坪), 마지기	1 평 = 3.305 785 m²
		·정보 및 단보	1 정보 = 9 917 m² = 0.01 ha
		·에이커	1 에이커 = 4 046 m² = 0.004 ha
		·헥타	1 헥타 = 1 m²
부피	·세제곱미터 단위 (㎝³, ㎧³, L)	·홉, 되, 말	1 되 = 1.8 L = 1 800 ㎤
		·석(石), 기마	1 말 = 18 L = 18 000 ㎤
		·겔런	1 겔런 = 3.785 412 L
		·루베	1 루베 = 1 m³
질량	·킬로그램 단위 (g, kg, t)	·근(斤), 관(貫)	1 근 = 600 g = 0.6 kg
		·파운드, 온스	1 관 = 3 750 g = 3.75 kg
		·돈, 당	1 파운드 = 453 g = 0.453 kg
			1 온스 = 28.349 g = 0.028 kg 1 돈 = 3.75 g (1 냥 = 10 돈)

[간단한 약식 환산법 : 50~300m²]

① 제곱미터로 표기되어 있는 숫자를 0.3으로 곱하기

(예시) 120m × 0.3 = 36평

② 제곱미터에 3을 곱하고 10으로 나누기

(예시) 120m × 3 = 360 > 36

| 기술 표준 2008.10